

#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00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2월 11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설관리공단이 우리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·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돛구장 중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기 위하여
- 나. 『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19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

### 『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5조에 따르고,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제3자 위탁 개요
- 대상시설 : 서남권 돛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
  - 수탁자 : 서울특별시체육회(회장 : 박원순)
  - 위·수탁기간 : 2016. 4.1 ~ 2017.12.31.(약 1년 8개월)
  - 위탁방법 : 시설관리공단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간 협약

## 나. 제3자 위탁 주요내용

- ①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개장초기 안정화 기반 조성
- ② 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관리·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
- ③ 위탁 범위, 위탁조건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
  - ▶ 위탁재산의 관리·운영 및 시설·장비 유지보수에 관한사항
  - ▶ 사업의 운영수익금, 사업의 지출에 관한 사항
  - ▶ 사용료 징수시 「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적용
- ④ 이용시민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
- ⑤ 시의 별도 재정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책임경영하되 초과 수익 발생시 시세입 처리
  - ▶ 위탁사용료 없이 초기 투자비용, 시설 개·보수 비용 등 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부담

## 다.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의 필요성

- 일반사업자 임대운영시 시설투자 대비 수익확보가 어려워 입찰 포기 또는 중도 사업포기 가능성이 높고, 이용시민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등 시립체육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

### ※ 유사사례

- ◆ 장충체육관 부설 체력단련장이 5회 유찰('15.5.7)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용도변경하여 직접 운영

- 서울특별시체육회 위탁시 창동테니스장 및 골프장 운영 노하우 및 전문 프로그램 활용으로 이용시민에게 저렴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
- 인근 학교의 체육 교육장소 및 운동부 훈련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  - ▶ 제3자 위탁시 시의회 의결 및 시장 승인 필요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4조
  - ▶ 수탁기관은 수입금의 일부를 시설운영에 사용 가능
-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
  - ▶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김인숙 (☎2133 -2678 )